51 (제245회 - 제4차 부록)

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,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

3. 주요내용

○ 제명변경

- “범죄예방 환경설계”를 “범죄예방 환경디자인”으로 변경

○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내용 추가

- 설치지원대상자 평가 기준(저소득층 등 취약가구)신설(안 제7조)

○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

-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내용 등(안 제8조)

○ 범죄예방협의체의 역할 추가

- 성주경찰서에 대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 요청 사항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10. 10.~2019. 10. 29, 의견없음

○ 규제심사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2019. 10. 31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조례명을 “범죄예방 환경디자인〞으로 변경하고,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,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운영, 범죄예방협의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과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